

## 과로 등이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

### [주 문]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### [이 유]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 1983.10.28.(주)○○상사에 입사하여 공무계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, 위 망인은 2001.2.8 07:00경 출근을 위해 골목길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통근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같이 뛰다가 도중에 포기한 동료 2명과 달리 300~400m 정도 떨어진 다음 정류장 앞까지 뒤쫓아 뛰어가서는 숨이 찬 상태에서 가까스로 탑승하였다가 그다음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몸에 이상을 느껴 내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의자를 양손으로 잡은 채 쓰러져 동료들의 응급조치를 받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날 07:15경 사망하였고,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한 사실, 망인의 취급업무는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이용한 파손된 기계의 용접 및 강열작업, 노후된 파이프의 교체작업, 배관설비, 기계설비, 유지보수 등 위 공장의 모든 시설, 설비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업무였는데, 업무특성상 주로 생산라인이 정지되거나 휴식시간에 작업을 하는 관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

우가 많았으나, 평소 손을 불기계가 있다든지 배관 등의 교체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사실, 망인의 작업장인 소외 회사는 연면적이 20,313평이나 되는 큰 건물로 오래 되어 넓었고, 또한 기계설비의 대부분이 건물 외곽 3~4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고소작업이 많았던 사실, 망인 소속의 공무계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중 4명은 야간업무를 교대로 수행하고 나머지 6명은 주간근무만 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며, 주간근무시간은 평일 07:50~18:10이고, 토요일은 07:50~15:30까지이고,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휴무이며, 야간근무조 근무시간은 18:00~08:00이었던 사실, 망인은 위 근로시간에 맞추어 입사시부터 1997.7월 말경까지 주·야간 교대업무를 하다가 1997.8월경부터 주간근무로 전환하였고, 출근은 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며, 작업 특성상 매일 약 1~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,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는 동절기라 사전에 방작업과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났으며, 정기휴무 및 규정휴무일에도 근무하였던 사실, 그러나 업무가 망인과 동료 근로자인 김○○가 소화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에 도움을 주어 처리한 사실 등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였다.

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누적된 직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

상병인 급성심부전증이 유발되었다거나,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통근버스 탑승시의 질주행위에 겹쳐서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, 이어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부전증은 당시 만 53세 3개월 남짓된 망인이 통근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300~400m를 질주한 탓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,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,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대부분이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의하여 출퇴근을 하였고,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15~2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사실, 이 사건 재해발생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망인과 함께 통근버스를 뒤쫓아 뛰다가 포기한 다른 2명의 근로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으나 지각하지 않고 출근한 사실을 알 수 있고, 여기에서 통근버스 탑승 이전에 탑승을 위하여 질주할 것인지 여부는 망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신의 나이와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통근버스에 타기 위하여 무리하게 질주한 행위가 작업의 사전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출근행위로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
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.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,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

아야 할 것이고,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·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.

앞에서 언급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,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여지가 있고,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나 질주 등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급성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조건이므로, 사정이 그러하다면,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반면, 기록상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.

### [결론]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